

국민연금은 든든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입니다

노령연금

61~65세 이후 평생 지급

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시면 만 61세 이후에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며 물가와 함께 매년 올라갑니다.

유족연금

기본연금액의 60~40% + 부양가족연금액

국민연금 가입자, 수급자 등이 사망할 경우,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며,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.

※ 해당되는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

장애연금

기본연금액의 100~60% + 부양가족연금액

질병,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정도(1급~3급)에 따라 지급됩니다.

※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%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
건강한 노후설계가 필요합니다

『60세 이상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40.6%로 1위, 건강문제가 37.8%로 2위를 차지..』

- 통계청, 2011년 사회조사

▶ 예상노후 월 생활비

[국민연금연구원 2009년3차조사, 단위:만원/월]

| 개인 | | 부부 |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최소* | 적정** | 최소* | 적정** |
| 76.3 | 112.0 | 121.5 | 174.6 |

*최소생활비: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, 응답자 주관적 판단에 의한 비용

**적정생활비: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하며, 응답자 주관적 판단에 의한 비용

▶ 더 많은 정보를 드립니다

■ 행복노후설계센터(전국 공단지사 및 상담센터)

- 노후준비 진단 등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제공
- 찾아가는 노후설계/은퇴설계 교육
- 노후생활정보 안내

■ 노후설계 전문사이트 '내연금'(csa.nps.or.kr)

- 국민연금/퇴직연금/개인연금 시뮬레이션
- 자가진단을 통한 노후준비 정도 점검
- 1:1 노후설계 상담 및 교육 신청

■ 다음카페 '행복미소'(cafe.daum.net/mylife337)

- 노후준비에 필요한 생생한 정보 공유
-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용한 정보 제공

농어업인 국민연금가입자를 위한

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안내



국민을 든든하게~
연금을 튼튼하게~

NPS 국민연금공단
National Pension Service

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



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

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시는 분

▶ 농어업인의 범위

-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,
- 연간 농/임/어업 경영을 통한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,
- 1년 중 90일 이상 농업(임업)에 종사하시는 분
-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

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-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
-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(2013년도 적용하는 2012년 평균소득월액은 1,955,395원입니다)
-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신 경우

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농어업인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
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

| | | | |
|--|--|--------|------------|
| [별지 제25호서식] | | (앞면) | |
|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| | | 처리기간 3일 |
| 농어업인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|
| | 주소 | 세대번호 | |
| 농어업인 해당일 | 년 월 일 | 유대전화 | |
| 농어업인 구분 |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인(축산업인, 임업인, 법인종사자 포함), <input type="checkbox"/> 어업인 | | |
|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| 원 | | |
| 연간 농어업 종사일 | 일 | | |
|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원수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원수: * 다민, 농산물 출하·유통·가공·수출입 등 종사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원수: * 다민,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등 종사자 (상기자는 법인에서 고용관계가 정기권 고용기간 종료로 마감해야 할 부활 것) | | |
| 농어업 규모 | 농지 | ㎡, 어선 | 톤, 양식 |
| *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항과 일치하는 증명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
| 일 | | | |

농어업인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서식으로, **전국 공단지사나 홈페이지(www.nps.or.kr)** 등을 통해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▶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 및 제출 방법

- [1차확인] 거주지 또는 경작지의 이·통장 확인
- [2차확인] 거주지 또는 경작지의 시·구·읍·면장 확인
 - 확인업무가 시·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
- **확인 완료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!**

농어업인 확인서 대신에 아래 서류를 제출 하셔도 됩니다

- 농지원부 : 농가주(세대주) 외의 분들은 '농어업인 확인서'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농어업경영체 등록(변경)확인서
- 축산업등록증
- 어업면허/어업권등록/어업허가/어업신고

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?

(최대지원금액) **2013년 현재 월 35,550원**입니다
- 연간 최대 426,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-

- 연금 기준소득월액이 "79만원미만"인 경우
→ 본인 월 보험료의 1/2 금액 정률지원
- 연금 기준소득월액이 "79만원이상"인 경우
→ 79만원 보험료의 1/2금액(35,550원) 정액지원

▶ 월 보험료에 따른 지원 금액

| 기준소득월액 | 보험료 (A) | 지원금액 (B) | 실제 납부할 보험료(A-B)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700,000원 | 63,000원 | 31,500원 | 31,500원 |
| 790,000원 | 71,100원 | 35,550원 | 35,550원 |
| 1,000,000원 | 90,000원 | 35,550원 | 54,450원 |
| 1,200,000원 | 108,000원 | 35,550원 | 72,450원 |

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, 각각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부부 모두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신청하신 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



- 상세내용은 가까운 지사로 문의해주세요 -